

제19차 전국위원회

- 당헌 개정안 -

2026. 2. 12.(목) 11:20



당헌 개정안

제19차 전국위원회의(2026. 2. 12.)

I. 의결주문

-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구 분	주요 내용
제 19 조 제 98 조	○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4인 이상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위해 사퇴하여 결위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
제 28 조	○ 당 대표 선출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경우,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개시일과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
제 43 조	○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 명확화
제 45 조	○ 상설위원회에 「2030쓴소리위원회」 및 「미디어위원회」 신설 ○ 인권위원회의 산하의 「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」를 상설위원회로 격상
제 87 조	○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·도의원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정
제100조 제100조의2	○ 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와 비대면 회의체 특례에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제외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(당헌)

III. 관련근거

[당헌 제13조(기능)]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2. 당헌의 채택 및 개정

-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
[당헌 제93조(의결절차)]

-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(당헌)

현행	개정안
<p>제 19 조 (기능)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.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. 단, <u>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궐위 시에는 제외</u> 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 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 	<p>제 19 조 (기능)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.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. 단, <u>당헌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</u> 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 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
<p>제 28 조 (임기)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<신설></p>	<p>제 28 조 (임기) 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<u>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개시일은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개시일과 동일하게 한다.</u></p>
<p>제 43 조 (구성)</p> <p>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장을 포함한</u>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	<p>제 43 조 (구성)</p> <p>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재적위원의</u>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5 조 (상설위원회)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1~2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 45 조 (상설위원회)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1~27. (생략)</p> <p><u>28.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</u></p> <p><u>29. 2030쓴소리위원회</u></p> <p><u>30. 미디어위원회</u></p>
<p>제 87 조 (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) ① ‘자치구·시·군의 장’ 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u>다만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u></p> <p>② 지역구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 회의원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</p> <p>③ 비례대표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시·도당 비례대표</p>	<p>제 87 조 (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) ① ‘자치구·시·군의 장’ 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u>다만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로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나, 당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비례대표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시·도당 비례대표</p>

현행	개정안
<p>공천위원회 포함)의 심사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신설> 다만, 비례대표 시·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%이상 포함되도록 하며,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 <p>⑥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,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>⑦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. 다만, 경선은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⑧ (생략)</p>	<p>공천위원회 포함)의 심사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당규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다만, 비례대표 시·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%이상 포함되도록 하며,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,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>⑦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. 다만, 경선은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98 조 (비상대책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 98 조 (비상대책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당 대표 사퇴 등 결위 2.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결위 <u><신설></u></p> <p>3.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 치를 의결한 경우</p>	<p>1. 당 대표 사퇴 등 결위 2.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 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결위. <u>다만,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</u> <u>을 위하여 사퇴함으로써 결위된</u> <u>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</u></p> <p>3.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 치를 의결한 경우</p>
<p>제 100 조 (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)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 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 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 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리</u> <u>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</u> <u>수 없다.</u> 1~4. (생략)</p>	<p>제 100 조 (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)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 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 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 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</u> <u>리위원회의 및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은</u> <u>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 1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00 조의 2 (비대면 회의체 특례)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 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 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</u> <u>각급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</u> <u>식으로 할 수 없다.</u> 1~4. (생략)</p>	<p>제 100 조의 2 (비대면 회의체 특례)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 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 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</u> <u>각급 윤리위원회의 및 당무감사위원회</u> <u>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 1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부칙(2026. 2. 12) 이 당헌은 2026년 2월 12일 제19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.</p>